

# 물품 구매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물품의 정의)**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, 비품 및 집기, 기자재, 가공품, 실험실습용 재료 및 시약, 소모품 및 인쇄물, 기계장치, 차량운반구 등 내·외자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08.11.1)

**제3조(구매업무)** 사무분장규정에 의해 구매담당부서의 장이 담당자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.

## 제2장 물품구입절차

**제4조(구매요구)** ①구매요구는 주관부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부서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②주관부서는 소요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기간별로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.

③구매요구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정확한 품명, 규격, 수량, 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시방서, 카타로그, 도면,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관부서)** 주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집행과 물품의 수급을 관장한다.

①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신청 또는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부서에 구매의뢰할 경우 예산을 배정한다.

②주관부서는 각 물품이 용도에 맞게 신청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보유물품의 지급가능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지급요청자에게 각 물품의 사양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주관부서는 요구자와 협의된 구입대상품목을 예산을 확인하고 배정받아 구매부서에 구매의뢰한다.

④구입예정금액이 1,000만원 이하의 비자산성 물품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.(개정 2008.11.1)

**제6조(구매부서)**(삭제 2008.11.1)

**제7조(구매 및 계약방법)** 구매부서는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, 경쟁계약, 수의계약, 단가계약 등의 구입방법과 계약조건(구입금액, 구입업체, 납기, 대금지급방법, 보증기간 등)을 정하여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

**제8조(검수요청)** 구매부서는 검수규정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구입결재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

권자에게 물품검수를 받도록 한다.

**제9조(인수 및 지출결재)** ①검수절차를 마친 물품은 자산등록 및 입고 등의 절차를 밟아 요구부서에 인계한다.  
②지출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10조(대가의 지급)** 검수를 완료한 후 납품업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의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3,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11조(선급금)** 외화표시 수입물품의 구입 등 『예산회계법시행령(이하 "예시령"이라 한다) 제56조 ①항』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그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경비를 선지급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계약

**제12조(경쟁입찰)** ①추정가격이 3,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은 경쟁입찰에 의해 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동일품목의 추정가격이 3,000만원 이하일 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.

③입찰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13조(수의계약)** ①경쟁계약에 의해 구입되어야 할 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.

1. 소유자나 제작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
2. 국가에서 구입하거나 구입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경우
3. 추정가격이 3,000만원 이하일 때
4. 『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』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시
5. 연구 및 실험실습 등 수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본교에 유리한 경우

②수의계약을 할 때는 복수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복수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나, 연구지원부서에서 확인한 연구와 관련된 300만원 이하의 시작품 제작 및 동일한 품목의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3.3.1>

③물품 구입 금액이 일천만원 이하일 경우 발주서로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다.<신설 2005.4.1>

**제14조(단가계약)**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15조(입찰자 지명)** 지명경쟁입찰은 입찰자 5명 이상을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명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계약조건상 본교에 유리한 경우 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입찰서류제출)** ①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개시 2시간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케 하며, 사용인감계(위임장),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등을 추가로 제출케 할 수 있다.

②입찰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입찰서는 밀봉하여 밀봉선에 인감을 날인케 하고 응찰자가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응찰서류는 총무팀장이 입회하여 개봉한다.

**제17조(입찰보증금)**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2시간 전까지 응찰예정금액의 5%를 초과하는 입찰보증금 혹은 이행(입찰)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한다.

**제18조(입찰 및 낙찰자 결정)** ①입찰은 사무처장의 입회하에 실시하며,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~100이내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1회 입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3회까지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결정한다.

③본조 2항에 의하여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.

④재입찰과 관련하여 시기와 방법은 본교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.

**제19조(계약서작성)** ①구매계약은 구매부서 결재 받은 내용대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 또는 구매부서장 명의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②동일업체 계약금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계약에 관계된 제반서류(시방서, 규격서, 카타로그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사용인감계, 계약보증 보험증권 등)를 첨부하고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차액보증금, 계약보증금, 하자보수보증금, 지체배상금)** ①입찰예정가격 100분의 85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제품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차액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거나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케 할 수 있다.

③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일정기간의 제품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케 할 수 있다.

④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계약에 의해 지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**제21조(하자담보 책임기간)** 제조구입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은 계약조건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.

**제22조(보증금 보관 및 귀속)** ①본 규정 제17조 및 제20조의 제 보증금은 재무팀에서 보관한다. 다만, 현금이 아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구매부서에서 보관한다.

②제 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시킨다.

**제23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, 동법시행령 및 재무부령에 의한 계약사무처리규칙, 물품구매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**부칙<1997.10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1999.10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00.3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03.3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05.4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06.4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08.11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표1】** <삭제 2008.11.1.>